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2.4.18 (수) 09:30

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4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3. 제안 이유

- 2001년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, 기본재산 구성 등 조문을 체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명시(안 제3조)

나. 기본재산 구성을 위한 재원(안 제5조)

다. 사업평가 및 행정지원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은 그동안 운용중인 조례를 체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